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04호 2011. 1. 10.(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7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7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 ----- 7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4호 공시송달 공고 ----- 7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5호 가좌진주1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 8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6호 롯데우람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 81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7호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	8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21호	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 공부 시행 공고 -----	8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24호	2011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	8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26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8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27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9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33호	2011년 숲가꾸기사업 사업면적 증가분 시행 공고 -----	9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9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7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2.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검암1지구	서구 검암동 635번지	663,302.9	-	663,302.9	

나. 용도지역·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63,302.9	-	663,302.9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396,324.1	-	396,324.1	69.8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1,989.1	-	151,989.1	22.9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4,989.7	-	114,989.7	17.3	

다.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 변경 없음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합 계		15,974	88	1,992	11	10,416	60	3,566	17
일 반 도 로	대로	-	-	-	-	-	-	-	-
	중로	3,113	7	-	-	2,109	3	1,004	4
	소로	12,407	68	1,942	9	8,098	53	2,367	6
보 행 자 전용도로	중로	49	2	-	-	-	-	49	2
	소로	405	11	50	2	209	4	146	5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종로	2	169	18~25	보조간선	1,507	검암동 산19 남측지구계	대로1-19 (검암동71-3)	일반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2	170	15~16	국지 도로	82	종로2-169	종로3-141	일반 도로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종로	2	184	18~25	보조 간선	520 (2,420)	검암동5-1 (서측지구계)	대로1-19	일반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3	72	12	집산 도로	194	소로3-4	소로1-3	일반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3	138	12	국지 도로	323	검암동 244-3	종로 2-16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3	139	12	국지 도로	325	종로 2-169	종로 3-14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3	140	12	특수 도로	24	대로 1-19	종로 3-139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종로	3	141	12	국지 도로	162	종로 2-170	종로 3-142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종로	3	142	12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종로 3-141	보행자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	10~16	국지 도로	1,061	종로 2-169	종로 2-16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75	종로 3-72	소로 2-1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82	소로 1-20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44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5	10~12	국지 도로	254	종로 2-184	종로 3-13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32	종로 2-169	소로 2-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34	종로 2-169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32	종로 2-169	소로 2-1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7	8	국지 도로	36	종로 2-184	소로 2-6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36	종로 2-184	소로 2-6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0	10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1-3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58	대로 1-1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09	중로 3-141	중로 2-17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33	소로 1-2	소로 1-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33	소로 1-2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07	소로 1-2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16	소로 2-10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319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158	소로 2-26	소로 2-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113	소로 1-3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130	소로 1-3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62	소로 2-18	소로 2-1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66	중로 2-169	소로 1-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20	소로 1-3	소로 2-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220	중로 3-138	소로 1-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62	중로 3-138	겸암4공원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130	소로 2-23	소로 2-2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32	소로 1-1	소로 2-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244	소로 1-3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93	소로 2-111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132	소로 2-28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34	소로 1-1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1	8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09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6	8	특수 도로	109	중로 2-169	소로 3-4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7	8	국지 도로	79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8	8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9	8	국지 도로	98	소로 2-37	소로 2-10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0	8	국지 도로	231	중로 3-138	소로 2-4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1	8	국지 도로	191	중로 3-138	소로 2-4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2	8	특수 도로	32	소로 1-1	소로 2-40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3	8	국지 도로	256	중로 3-139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4	8	국지 도로	615	중로 3-139	소로 2-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5	8	국지 도로	214	소로 1-1	소로 2-4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225	중로 3-139	소로 2-4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21	소로 2-4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30	소로 2-4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9	8	국지 도로	110	소로 1-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0	8	국지 도로	32	중로 3-139	소로 2-4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1	8	국지 도로	76	중로 2-169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2	8	국지 도로	115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3	8	국지 도로	259	중로 2-184	소로 2-5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4	8	국지 도로	231	중로 2-184	소로 2-5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5	8	국지 도로	110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6	8	국지 도로	206	중로 2-184	소로 2-6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7	8	국지 도로	109	소로 2-56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8	8	국지 도로	113	소로 2-56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9	8	국지 도로	204	중로 2-169	연희동 73-1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0	8	국지 도로	134	소로 2-59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1	8	국지 도로	79	소로 2-59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2	8	국지 도로	107	소로 1-1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3	8	국지 도로	106	소로 2-65	소로 2-6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4	8	국지 도로	26	소로 1-17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5	8	국지 도로	242	소로 2-62	소로 2-6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6	8	국지 도로	92	소로 2-65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30	중로 2-169	소로 2-5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9	8	국지 도로	68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11	8	국지 도로	509	소로 1-3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10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379	중로 2-184	소로 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305	중로 2-184	소로 2-5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392	대로 1-19	중로 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26	소로 2-21	3호어린이공 원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22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2	6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23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4	6	특수 도로	36	중로 3-13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5	6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46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86	소로 2-58	소로 2-6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95	중로 2-170	소로 2-14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2) 주 차 장 :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5,449.8	-	5,449.8		
기정	1	검암1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607-1	2,653.9	-	2,653.9	인고93-130 (`93.9.28)	
기정	2	검암2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659	2,795.9	-	2,795.9	인고93-130 (`93.9.28)	

3) 공 원 : 변경 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개소		25,141.3	-	25,141.3		
기정	2	장모루 근린공원	장모루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594-2	5,703.6	-	5,703.6	인고93-130 (`93.9.28)	
기정	2	간재울 어린이공원	간재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07-2	2,500.2	-	2,500.2	인고93-130 (`93.9.28)	
기정	10	검암 근린공원	검암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636-9	654.2 (296,308.2)	-	654.2 (296,308.2)	건고66-2701 (`66.8.31)	()는 전체 면적
기정	3	중동 어린이공원	중동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13-5	4,224.6	-	4,224.6	인고93-130 (`93.9.28)	
기정	4	검바위 어린이공원	검바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19-5	2,040.0	-	2,040.0	인고93-130 (`93.9.28)	
기정	5	과기 어린이공원	과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57-2	2,394.7	-	2,394.7	인고93-130 (`93.9.28)	
기정	6	빈정 어린이공원	빈정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81	6,983.5	-	6,983.5	인고93-130 (`93.9.28)	
기정	7	검암 소공원	검암 소공원	소공원	검암동 636-6	640.5	-	640.5		

4) 녹 지 : 변경 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3,794.4	-	3,794.4		
기정	1	검암1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95-1~666-4	3,794.4	-	3,794.4	인고93-130 (`93.9.28)	

5) 학 교 : 변경 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개소		47,009.2	-	47,009.2		
기정	1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629-3	11,048.7	-	11,048.7	인고93-130 (`93.9.28)	
기정	2	중학교	중학교	검암동 619-4	12,307.4	-	12,307.4	인고93-130 (`93.9.28)	
기정	3	서인천 고등학교	고등학교	검암동 636-7	23,653.1	-	23,653.1		

6) 공 공 청 사 :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개소		3,462.4	-	3,462.4		
기정	1	공공청사	동 사 무 소	검암동 606-8	1,050.1	-	1,050.1	인고93-130 (`93.9.28)	
기정	2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검암동 606-9	1,050.3	-	1,050.3	인고93-130 (`93.9.28)	
기정	3	공공청사	우 체 국	경서동 660-2	679.8	-	679.8	인고93-130 (`93.9.28)	
기정	4	공공청사	파 출 소	경서동 660-3	682.2	-	682.2	인고93-130 (`93.9.28)	

7) 하 수 도 : 변경 없음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11.5	-	411.5		
기정	1	하수도	오수펌프장	검암동 594-1	411.5	-	411.5	인고2000-113 (2000.6.30)	

8)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76.1	-	1,676.1		
기정	1	사회복지시설	검암동 679-3	1,676.1	-	1,676.1	인고2004-258 (2005. 1. 3)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A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2	58,233.4	2	380.4	공동건축
		3	45,001.4	
		4	3,806.7	
		5	6,781.1	공동건축
		6	2,263.8	
34	12,517.3	1	10,222.5	공동건축
		2	745.0	
		3	1,549.8	
37	11,925.9	1	11,925.9	
56	11,746.4	1	11,293.8	공동건축
		2	452.6	

2) 근린생활시설용지

○ 필지규모 6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30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6	2,715.2	1	810.9	4
		2	1,098.0	5
		3	806.3	4
7	5,255.3	1	1,460.7	6
		2	467.6	2
		3	696.2	2
		4	1,152.1	4
		5	302.2	-
		6	370.9	2
		7	805.6	4
8	4,438.0	1	264.5	-
		2	1,110.6	5
		3-1-1	301.2	-
		3-1-2	306.2	-
		3-1-3	305.4	-
		3-1-4	624.5	2
		3-1-5	305.5	-
		3-1-6	311.1	-
		3-1-7	306.9	-
		3-2	270.0	-
		4	332.1	2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2	3,721.1	1	559.8	2
		2	523.1	2
		3	308.0	-
		4	167.1	-
		5	1,552.2	3
		6	330.5	-
		7	280.4	-
21	5,547.4	1	156.3	-
		2	235.2	-
		3	464.0	2
		4	668.0	2
		5-1	991.9	2
		5-2	2,040.0	5
		5-3	992.0	2
23	4,023.7	1	208.8	공동건축
		2	114.1	
		3	213.2	-
		4	523.5	-
		5	808.4	-
		6	718.7	2
		7	1,437.0	4
24	3,189.3	1	394.2	-
		2	1,082.4	3
		3-1	396.1	-
		3-2	430.0	-
		3-3	886.6	2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25	973.9	1	413.1	-
		2	560.8	2
26	1,654.2	1	121.4	-
		2	746.5	3
		3	786.3	3
40	3,554.9	1	1,371.9	6
		2	2,183.0	10
55	3,555.2	1	2,019.7	8
		2	1,535.5	6
58	4,745.5	1-1	1,322.4	6
		1-2	539.4	2
		1-3	539.4	2
		2	1,630.2	8
		3	714.1	2
77	3,854.6	1	1,886.4	8
		2	1,174.0	4
		3	794.2	3
82	3,711.4	1	394.4	2
		2	117.1	-
		3	230.9	-
		4	502.8	2
		5	159.9	-
		6	207.0	-
		7	235.3	-
		8	384.1	2
		9	221.5	-
		10	216.2	-
		11	129.8	-
		12	230.2	-
		12-1	90.0	-
		13	154.1	-
		14	311.0	-
15	127.1	-		
85	1,260.1	1	1,260.1	4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6	4,194.3	1-1	330.3	-
		1-2	342.7	-
		1-3	231.2	-
		2	218.4	-
		3	334.0	-
		4	311.3	-
		5	197.1	-
		6	1,708.1	3
		7	186.3	-
		8	334.9	-
91	3,585.2	1	694.1	3
		2	752.5	2
		3	600.9	2
		4	124.6	공동개발
		5-1-1	378.1	
		5-1-2	218.9	-
		5-2	816.1	4
92	5,498.6	1	1,319.7	6
		2	378.5	2
		3	1,902.4	8
		4	1,021.6	4
		5	509.0	2
		6	367.4	2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93	3,769.4	1	1,081.8	2
		2	1,007.3	2
		3	499.8	-
		4	424.1	-
		5	270.8	-
		6	485.6	-
94	4,165.7	1	294.1	-
		2	284.2	-
		3	139.2	-
		4	515.0	2
		5-2	363.1	2
		5-3	316.6	-
		5-4	342.5	-
		6	262.5	-
		7	202.7	-
		8	246.9	-
		9	213.2	-
		10	225.1	-
		11	150.8	-
		12	183.7	-
13	184.0	-		
14	242.1	-		
100	2,592.6	1	628.3	2
		2	336.8	-
		3	378.2	-
		4-1	350.4	-
		4-2-1	329.6	-
		4-2-2	334.6	-
		5	234.7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01	2,526.9	1	923.0	4
		2	707.9	4
		3	896.0	4
103	3,784.1	1-1	301.5	-
		1-2	262.5	-
		1-3	222.1	-
		2	165.1	-
		3	222.4	-
		4	315.4	-
		5	984.8	5
		6	175.1	-
		7	221.7	-
		8	156.6	-
		9	756.9	3
106	5,585.6	1	195.0	-
		2	469.3	2
		3	209.1	-
		4	839.4	4
		6	487.3	2
		5	245.3	-
		7	168.3	-
		8	741.9	2
		9	315.6	-
		10	325.5	2
		11	118.8	-
		12	237.5	-
		13	159.0	-
		14	245.1	-
		15	443.5	2
		16	385.0	2

3) 단독주택용지

○ 필지규모 4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0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8	4,502.8	1	223.8	-
		2-1	639.1	4
		2-2	398.6	2
		2-3	523.5	2
		3	746.1	2
		4-1	200.5	-
		4-2	893.0	3
		4-3	496.0	2
		5	382.2	2
19	2,987.7	1-1	405.1	2
		1-2	380.9	2
		1-3	293.0	-
		2	195.6	-
		3	310.2	-
		4	149.2	-
		5	120.1	-
		6	156.7	-
		7	190.7	-
		8	146.0	-
		9	144.9	-
10	495.3	2		
20	3,359.9	1	1,428.0	6
		2	421.7	2
		3	570.7	2
		4	779.4	3
		5	160.1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25	5,566.6	3	1,459.6	5
		4	1,395.2	5
		5-1	517.7	2
		5-2	532.2	2
		6	1,049.8	4
		7	214.3	공동건축
		8	113.1	
		9	284.7	-
26	1,731.9	5	462.0	2
		6	244.9	-
		7	1,025.0	4
27	1,322.1	1	421.4	2
		2	459.2	2
		3	441.5	2
28	2,918.6	1	322.0	-
		2	423.4	2
		3	633.4	3
		4	274.7	-
		5-1	835.3	4
		5-2	429.8	2
29	3,590.7	1-1	441.8	2
		1-2	208.0	-
		1-3	208.0	-
		1-4	208.0	-
		1-5	208.0	-
		1-6	208.0	-
		1-7	208.0	-
		1-8	208.0	-
		1-9	208.0	-
		1-10	208.0	-
		1-11	208.0	-
		1-12	441.5	2
		2	333.6	-
		3	293.8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적(㎡)	
30	4,675.1	1	1,229.1	3
		2	484.3	-
		3	393.4	-
		4	295.4	-
		5	465.1	-
		6	1,192.1	4
		7	615.7	2
31	2,931.8	1	396.3	-
		2	777.5	2
		3	1,122.7	3
		4	406.3	2
		5	229.0	-
33	3,018.8	1	1,300.0	5
		3	1,468.1	8
		4	250.7	-
41	3,268.4	1	959.5	4
		2-1-1	899.8	4
		2-1-2	898.9	4
		3	510.2	2
42	4,197.7	1	2,707.0	12
		2	1,490.7	6
43	5,218.1	1	293.3	-
		2	213.1	-
		4	253.4	-
		5	720.2	2
		6	277.3	공동개발
		7	106.3	
		8	389.3	-
		9	649.5	2
		10-1	991.7	3
		10-2-1	772.1	-
		10-2-2	551.9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44	4,200.6	1	246.8	-
		2	274.4	-
		3	104.0	-
		4	127.8	-
		5	385.2	2
		6	380.8	2
		8	167.9	-
		9	219.2	-
		10	317.5	-
		11	161.7	-
		12	185.1	-
		13	427.8	2
		14	127.4	-
		15	195.7	-
		16	161.0	-
		17	214.3	-
		18	145.7	-
		19	358.3	-
		45	5,997.3	1
2	572.8			2
3-1	243.5			-
3-2	297.4			-
4	111.1			-
5	345.7			-
6	364.5			2
7	399.3			2
8	237.1			-
9	826.5			4
10	323.0			-
11	233.2			-
12	135.9			-
13	154.6			-
14	94.4			-
15	529.6	2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46	1,451.9	1-1	385.5	-
		1-2-1	288.7	-
		1-2-2	288.6	-
		2	200.0	-
		3	289.1	-
47	2,558.5	1	566.4	3
		2	640.2	3
		3	191.4	-
		4-1	284.2	-
		4-2	876.3	4
50	1,422.8	1	949.3	4
		2	290.0	-
		3	90.2	-
		4	93.3	-
51	4,943.5	1	922.5	4
		2-1	422.3	-
		2-2	264.7	-
		2-3	264.7	-
		2-4	264.7	-
		2-5	264.7	-
		2-6	264.7	-
		2-7	264.7	-
		2-8	422.3	-
		2-9	264.7	-
		2-10	264.7	-
		2-11	264.7	-
		2-12	264.7	-
		2-13	264.7	-
2-14	264.7	-		
53	2,403.1	2	201.3	-
		3	403.8	2
		4	1,147.5	4
		5	384.2	2
		6	266.3	-
54	4,957.0	1	243.2	-
		2	323.1	-
		3	521.6	2
		4	203.0	-
		5	1,156.9	4
		6	706.2	2
		7	1,387.6	6
9	415.4	2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적(㎡)	
59	2,761.5	1	359.6	-
		2-1	356.9	-
		2-2	356.9	-
		2-3	357.0	-
		2-4	357.0	-
		2-5	357.1	-
		2-6	357.0	-
		3	260.0	-
60	3,110.9	1-1	1,398.2	6
		1-2	668.4	2
		2	327.4	-
		3	201.8	-
		4	192.6	-
		5	322.5	-
61	3,309.7	1-1-1	283.7	
		1-1-2	283.5	
		1-2	597.9	2
		2	730.0	2
		3	206.1	-
		4	944.2	4
		5	264.3	-
62	5,726.7	634-1	324.5	-
		634-9	531.4	-
		634-15	397.0	-
		634-2	385.0	2
		634-8	396.6	2
		634-7	281.0	-
		634-10	330.0	-
		634-11	330.0	-
		634-12	330.0	-
		634-13	439.3	-
		634-14	112.4	
		634-6	222.9	공동개발
		634-5	120.5	
		634-4	255.1	-
634-3	1,271.0	4		
63	4,948.0	1	1,122.5	4
		2	411.1	2
		3	136.0	-
		4	379.9	2
		5	2,379.0	11
		6	519.5	2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64-1	1,523.8	1	90.1	-
		2	385.9	2
		3	407.3	2
		4	640.5	-
64-2	2302.1	1	870.6	4
		2-1	478.6	2
		2-2	952.9	4
64-3	1,654.6	1	1,654.6	4
65	3,887.7	1	832.5	4
		2	1,838.2	6
		3	370.4	-
		4	162.0	-
		5	168.0	-
		6	516.6	2
66	477.3	1	96.3	-
		2	381.0	2
67	3,160.0	1	720.6	3
		2	689.7	3
		3	155.1	-
		4	885.5	4
		5	311.8	-
		6	182.6	-
		7	116.7	공동건축
		8	98.0	
68	3,114.9	1	894.0	4
		2	559.1	2
		3	420.8	2
		4	259.2	-
		5	113.1	-
		6	110.7	-
		7	115.5	-
		8	145.6	-
		9	496.9	2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69	3,740.6	1-1	395.3	-
		1-2	231.6	-
		2	876.7	4
		3-1	292.7	-
		3-2	284.5	-
		3-3	284.6	-
		3-4	292.7	-
		4	210.0	-
		5	174.1	-
		6	117.8	-
		7	255.7	-
		8	170.5	-
		9	154.4	-
70	3,9991.0	1-1	248.0	-
		1-2	231.5	-
		1-3	231.6	-
		1-4	281.0	-
		1-5	259.6	-
		1-6	259.3	-
		2	112.8	-
		3-1	887.1	4
		4-1	237.8	-
		4-2	238.0	-
		4-3	232.0	-
		4-4	288.4	-
		4-5	244.0	-
		4-6	239.9	-
		71	3,684.9	1-1
1-2	228.1			-
1-3	228.1			-
1-4	228.1			-
2	979.9			4
3	777.2			3
4	267.8			-
5	744.6			4
72	3,683.0	1	1,032.0	4
		2-1	1,587.4	6
		3	144.3	-
		4	487.1	2
		5	432.2	2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73	3,485.4	1	105.9	-
		2	96.9	-
		3	331.8	-
		4-1	383.0	2
		4-2	380.3	2
		5	227.9	-
		6	472.9	2
		7	254.4	-
		8	292.9	-
		9	371.7	2
		10	344.2	-
74	2,650.1	1	681.9	3
		2	297.5	-
		3	378.1	2
		4	1,292.6	6
75	2,118.7	1	785.3	3
		2	147.7	-
		3	1,185.7	6
76	4,707.2	1	760.4	4
		2	3,505.9	8
		3	347.4	-
		4	93.5	-
78	5,359.8	1-1	1,031.1	3
		1-2-1-1	1,052.7	3
		1-2-1-2	340.4	-
		1-2-2	348.2	-
		2	2,587.4	8
79	4,938.6	1	665.8	2
		2	628.0	2
		3	1,316.8	4
		4-1	469.6	-
		4-2	466.2	-
		5	1,392.2	4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0	1,576.7	1	462.8	2
		2	454.1	2
		3	659.8	2
81	5,358.2	1	677.9	2
		2	1,023.4	3
		3	866.9	2
		4	366.0	-
		5	150.8	-
		6	204.2	-
		7	303.3	-
		8	195.1	-
		9	498.7	2
		10	396.4	-
		11	415.0	2
		12	260.5	-
83	5,268.2	1	313.6	-
		2	412.1	2
		3	232.5	-
		4	235.2	-
		5	398.2	-
		6-1	677.3	2
		6-3	299.9	-
		6-4	339.9	-
		6-5	362.0	-
		6-6	362.0	-
		6-7	362.0	-
		7	217.7	-
		8	467.1	-
9	588.7	2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7	4,231.6	1	699.0	3
		2	96.8	-
		3-1	295.3	-
		3-2	295.3	-
		3-3	295.3	-
		3-4	294.0	-
		4	260.6	-
		5	166.4	-
		6	205.4	-
		7	221.9	-
		8	247.7	-
		9	123.1	-
		10	231.8	-
		11	236.3	-
88	7,913.4	1-1	739.8	-
		1-2	412.0	-
		1-3	427.6	-
		1-4	435.8	-
		1-5	492.9	-
		1-6	499.7	-
		1-7	968.6	-
		1-8	989.8	-
		1-9	498.8	-
		1-10	484.2	-
		1-11	421.3	-
		1-12	409.1	-
		1-13	399.3	-
		1-14	734.5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9	3,816.7	1	2,872.9	10
		3	228.3	-
		4	186.0	-
		5	529.5	2
90	2,452.2	1	1,566.2	6
		2-1	428.0	-
		2-2	458.0	-
95	5,973.0	1	470.5	2
		2	319.2	-
		3	259.2	-
		4-1	363.9	-
		4-2	363.9	-
		5	1,494.5	6
		6	1,863.2	6
		7	145.6	-
		8	190.5	-
		9	260.4	-
		10	107.1	-
96	1,241.6	11	135.0	-
		2	325.6	-
		3	134.6	-
		4	104.6	-
		5	217.1	-
97	2,041.9	6	459.7	2
		2	1,126.7	4
		3	438.2	2
		4	274.5	-
		5	202.5	-
98	2,175.6	1	833.7	3
		2	558.1	2
		3	181.0	-
		4	94.5	-
		5	229.1	-
		6	279.2	-
99	4,931.3	1	1,138.0	4
		2-1	796.3	2
		2-2	826.6	2
		3	651.2	2
		4	198.9	-
		5	500.1	2
		6	593.7	2
7	226.5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00	1,151.1	6	189.9	-
		7	346.5	-
		8	614.7	2
102	1,690.2	1	614.2	2
		2	1,076.0	4
104	4,042.8	1-1	570.0	2
		1-2-1	461.2	-
		1-2-2	297.5	-
		2-1	484.8	2
		2-2	653.9	2
		3	141.8	-
		4	315.9	-
		5	400.8	-
		6	372.0	-
		7	344.9	-
105	3,371.3	1	1,687.9	5
		2-1	415.1	2
		2-2	501.4	2
		3	327.7	2
		4	439.2	2
107	9,486.6	1	4,229.9	10
		2	1,507.9	4
		3	575.3	2
		4	413.5	2
		5	191.0	-
		6	2,569.0	6
108	3,101.1	1	3,101.1	13
110	2,683.5	1	577.5	2
		2	1,017.9	4
		3	387.7	2
		4	483.9	2
		5	216.5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11	4,136.7	1	3,995.6	12
		2	141.1	-
112	2,962.6	1	360.7	-
		2	1,900.1	5
		3	572.5	2
		4	129.3	-

4) 종교집회장용지 : 변경 없음

- 종교집회장용지(F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44	1,308.0	621-19	271.0	공동건축
		621-6	1,037.0	
68	511.5	653-4	511.5	
96	2,961.5	657-1	2,961.5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A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2(2~6),34,37,56	2(2~6),34,37,56 (공동주택지 A용도)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A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19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A	
		배 치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 축 선	-	

2) 근린생활시설 용지 : 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6(1~3),7,8,12,21, 23(1~7),24,25(1~2), ,26(1~3),40,55,58, 77,82,85(1),86,91,9 2),93,94,100(1~4- 2),101,103,106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6(1~3),7,8,12,21, 23(1~7),24,25(1~2), ,26(1~3),40,55,58, 77,82,85(1),86,91,9 2),93,94,100(1~4- 2),101,103,106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B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B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B	
		배 치	°별표3의 B	
		색 채	°별표4의 B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2용도) 결정 조서(10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8(5),19(3~5),20(1~4),25(4,5-1,6~9),28(4,5-2),29(1-1~6,2~3),31(3~4),41(1,2-1~1-2,3),44(1~6,8~13),45(1~2,3-1~2,8~11,15),51(2-8~14),53(5-6),54(2~3,5),59(2-6),61(1-2,2~4),62(2-1,5~7),70(1-1~3,2,3-1,4-2~6),71(5),72(5),73(1~2),74(1,4),76(2),83(3~5,6-1,6-3~4),95(1,4-1~2,5~6,9~11),97(2~3),98(3~5),99(1),107(1)	18(5),19(3~5),20(1~4),25(4,5-1,6~9),28(4,5-2),29(1-1~6,2~3),31(3~4),41(1,2-1~1-2,3),44(1~6,8~13),45(1~2,3-1~2,8~11,15),51(2-8~14),53(5-6),54(2~3,5),59(2-6),61(1-2,2~4),62(2-1,5~7),70(1-1~3,2,3-1,4-2~6),71(5),72(5),73(1~2),74(1,4),76(2),83(3~5,6-1,6-3~4),95(1,4-1~2,5~6,9~11),97(2~3),98(3~5),99(1),107(1) 단독주택용지 C2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2 불허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1 변경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 변경의 C2 불허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1 변경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 변경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2	형 태	·별표2 변경의 C2		
		배 치	·별표3의 C2	배 치	·별표3의 C2		
		색 채	·별표4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 축 선	-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3용도) 결정 조서(12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33(1,3,4),51(1,2-1~7),53(4),54(6~8),59(1,2-1~3),62(1),63(1,3,5~6),65(1,3~6),71(1-1~4,2),72(1,2-1),73(4-2,7~11),75(1,3,7),78(2),81(2~8),83(1~2),87(3-4,4),88(1-7~8),89(1,4~5),107(1,6),108(1) 단독주택용지 C3	33(1,3,4),51(1,2-1~7),53(4),54(6~8),59(1,2-1~3),62(1),63(1,3,5~6),65(1,3~6),71(1-1~4,2),72(1,2-1),73(4-2,7~11),75(1,3,7),78(2),81(2~8),83(1~2),87(3-4,4),88(1-7~8),89(1,4~5),107(1,6),108(1) 단독주택용지 C3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3 불허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1 변경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 변경의 C3 불허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1 변경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 변경의 C3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3	형 태	·별표2 변경의 C3		
		배 치	·별표3의 C3	배 치	·별표3의 C3		
		색 채	·별표4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 축 선	-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경사유
C1	허용·불허용도, 형태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변경	건축 허용용도 추가 및 형태기준 변경
C2	허용·불허용도, 형태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변경	건축 허용용도 추가 및 형태기준 변경
C3	허용·불허용도, 형태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변경	건축 허용용도 추가 및 형태기준 변경

4) 교육시설용지 : 변경 없음

■ 교육시설용지(D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46(4),57,64	46(4),57,64 (교육시설용지 D용도)	용 도	◦학교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5) 공공청사용지 : 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E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23(8,9),85(2,3)	23(8,9),85(2,3) (공공청사용지 E용도)	용 도	◦공공청사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6) 종교용지 : 변경 없음

■ 종교용지(F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44(7,20),68(10),96(7)	44(7,20),68(10),96(7) (종교용지 F용도)	용 도	◦종교집회장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7)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G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90(3)	90(3) (사회복지시설용지 G용도)	용 도	◦별표1 G용도의 지정 및 권장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별표 2] : 건축물 형태 분류표 : 변경

[별표 3] : 건축물 배치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4] :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5] :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별표 6] :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별표 7]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변경 없음

[별표 8] : 기타사항 : 변경 없음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기정)

구분	A	B	C1	C2	C3	D ~ G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D) 공공청사(E) 종교집회장(F) 사회복지시설(G)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12m이상 도로에 12m 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G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식품제조업) (단, 결식아동 및 사회복지사업에 한하며 지하1층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 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초과 1.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로 완화
-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 주4)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주5)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 판별, 샌드위치 판별,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 주6)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 주7)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변경)

구분	A	B	C1	C2	C3	D ~ G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D) 공공청사(E) 종교집회장(F) 사회복지시설(G)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육외골프 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12m²상도로에 12m 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G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식품제조업) (단, 결식아동 및 사회복지사업에 한하며 지하1층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 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초과 1.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로 완화
-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 주4)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1층의 높이를 산정한다)
- 주5)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주6)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 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 주7)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 주8)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별표 2]

건축물 형태 분류표 (기정)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검양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용지 (C1,C2, 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이하로 제한 ◦검양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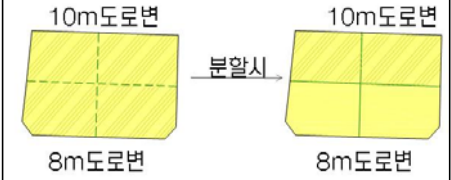
건축물 형태 분류표 (변경)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검양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용지 (C1,C2, 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이하로 제한 (단,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1층의 높이를 산정한다) ◦검양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 3]

건축물 배치 분류표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담장 설치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를 권장 -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담장설치불허구간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중로 2-169호선, 중로 2-184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단독주택용지 (C1,C2,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 지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이 8m 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1적용 - 전면이 10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2적용 - 전면이 12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3적용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한 획지에 대한 기준은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별표 4]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색채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암1구역 북측 및 서측은 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근린생활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단, 강조색은 가능)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단독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 색채계획목표

◦색채계획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심미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임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색채 사용
-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
- 구역내의 변화로운 색채 형성으로 식별성 및 미관의 개선
- 대상주민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해 보여지는 가로경관의 시각효과 개선

■ 색채의 분류

◦자율적인 색채계획을 최대한 보장하되 색채사용의 범위를 명시하여 색채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함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 5]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기 타 사 항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1)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2) 공동주차통로

- 획지 2개소당 1개의 공동주차통로 설치를 권장하며 통로폭 최소 3 m이상 확보(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별표 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도시계획도로	
도시 계획 도로	-	가로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설치 ◦시설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식재하며, 식재간격은 6~8m을 기준으로 함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 및 일반콘크리트블럭 등의 재료 사용 유도 ◦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달도록 계획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 7]**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변경 없음)**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별표 8]**기 타 사 항 (변경 없음)**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7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2.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검암2지구	서구 검암동 506-1번지 일원	408,826.0	-	408,826.0	

나. 용도지역·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 주거지역 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8,826.0	-	408,826.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719.0	-	210,719.0	51.5	
	제2종일반주거지역	66,286.0	-	66,286.0	16.2	
	제3종일반주거지역	131,821.0	-	131,821.0	32.3	

■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	1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검암동 519-1번지 일원	5층 이하	154,282.0	-	154,282.0	인고2000-113 (2000.6.30)	

다.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1) 도 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합 계		9,699	49	1,368	12	5,344	28	2,987	9
일 반 도 로	대로	-	-	-	-	-	-	-	-
	중로	1,533	5	-	-	1,059	3	474	2
	소로	7,864	38	1,261	10	4,260	24	2,343	4
보행자전용도로		302	6	107	2	25	1	170	3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9	18~ 25	보조 간선	783 (2,330)	대로 1-19 (검암동산19)	검암동71-3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2	171	15	국지 도로	157	중로 2-169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중로	2	172	15	국지 도로	119	중로 2-169	소로 1-2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5	12	국지 도로	200	중로2-169	소로 2-7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6	12	국지 도로	274	중로2-172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424	소로 1-25	중로 3-1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7	10~ 16	국지 도로	123	중로2-169	소로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9	10~ 16	국지 도로	194	중로 2-169	소로 2-7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98	소로 1-9	중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36	중로2-169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36	중로2-169	소로2-7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78	소로2-11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0	8	국지 도로	98	소로2-69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1	8	국지 도로	73	소로2-7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592	소로2-68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78	소로2-11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0	8	국지 도로	98	소로2-69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1	8	국지 도로	73	소로2-7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592	소로2-68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3	8	국지 도로	190	소로2-72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4	8	국지 도로	91	소로1-9	소로2-7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5	8	국지 도로	98	소로2-72	소로2-7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9	8	국지 도로	100	소로 1-9	중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2	8	국지 도로	98	소로1-10	소로2-7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3	8~ 12	국지 도로	138	중로 2-169	중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4	8	국지 도로	117	소로2-82	소로2-8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6	8	국지 도로	752	소로 1-6	중로 2-17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4	8	국지 도로	113	소로 2-96	소로 1-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6	8	국지 도로	115	소로 1-27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8	8	국지 도로	124	소로2-8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9	8	국지 도로	407	소로1-6	소로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0	8	국지 도로	42	소로2-86	소로2-9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1	8	국지 도로	36	소로2-99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2	8	국지 도로	500	소로3-18	소로2-10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3	8	국지 도로	40	소로2-86	소로2-10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4	8	국지 도로	36	소로2-102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5	8	국지 도로	82	소로1-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6	8	국지 도로	136	소로1-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10	8	특수 도로	25	대로1-19	소로2-69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626	중로2-169	소로3-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608	소로1-27	소로3-2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9	6	특수 도로	110	소로2-68	소로2-73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0	6	특수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1	6	특수 도로	26	대로1-19	소로3-17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56	대로1-19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053	중로1-169	소로1-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2) 주 차 장 :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개소		3,160.6	-	3,160.6		
기정	3	검암3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503-8	1,400.4	-	1,400.4	인고93-130 (`93.9.28)	
기정	4	검암4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515-1	1,760.2	-	1,760.2	인고93-130 (`93.9.28)	

3) 공 원 : 변경 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개소		18,266.9	-	18,266.9		
기정	1	검여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496	12,475.2	-	12,475.2	인고93-130 (`93.9.28)	
기정	8	삼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504-1	2,070.3	-	2,070.3	인고93-130 (`93.9.28)	
기정	9	허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534-3	2,977.8	-	2,977.8	인고93-130 (`93.9.28)	
기정	10	검암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533	743.6 (296,396)	-	743.6 (296,396)	건고66-2701 (`66.8.31)	()는 전체면적

4) 녹 지 : 변경 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개소		4,411.4	-	4,411.4		
기정	2	검암2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492-3	540.7	-	540.7	인고93-130 (`93.9.28)	
기정	3	검암3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25-4, 525-9	647.4	-	647.4	인고93-130 (`93.9.28)	
기정	4	검암4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24-1	3,223.3	-	3,223.3	인고93-130 (`93.9.28)	

5) 학 교 : 변경 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개소		32,721.3	-	32,721.3		
기정	5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495	10,395.3	-	10,395.3	인고93-130 (`93.9.28)	
기정	6	중 학 교	중 학 교	검암동 497	10,535.0	-	10,535.0	인고93-130 (`93.9.28)	
기정	7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536-1	11,791.0	-	11,791.0	인고93-130 (`93.9.28)	

6) 공 공 청 사 :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개소		649.5	-	649.5		
기정	6	파출소	공공청사	검암동 514-7	649.5	-	649.5	인고93-130 (`93.9.28)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A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11	31,852.7	1	26,010.8	공동건축
		2	5,841.9	
30	32,089.3	1	15,740.7	
		2	16,348.6	
31	15,740.8	1	15,740.8	
37	31,485.8	1	15,743.1	
		2	15,742.7	

2) 근린생활시설용지

- 필지규모 600㎡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300㎡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적(㎡)	
7	5,617.1	1	1,633.6	4
		2-1	1,322.9	2
		2-2	697.6	-
		3	842.8	2
		4	545.6	-
		5	574.6	-
25	4,389.9	1	350.5	-
		2	500.1	-
		3	2,921.7	6
		4	251.7	-
		5	365.9	-
26	3,705.7	1-1	2,661.7	5
		1-2	1,044.0	-
27	2,415.9	1	1,044.0	2
		2	1,371.9	3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적(㎡)	
28	2,375.0	1	494.9	-
		2-1	194.4	공동건축
		2-3	220.5	-
		2-4	221.2	공동개발
		2-5	220.8	
		3	209.1	-
		4	618.1	-
57	3,338.7	1	1,071.9	3
		2	274.8	-
		3	359.8	-
		4	424.4	-
		5	504.7	-
		6	703.1	-
58	2,983.7	1	313.2	공동건축
		2	113.7	
		3-1	220.8	-
		3-2	205.1	-
		3-3	447.2	-
		4	552.2	-
		5	580.8	-
		6	550.7	-
59	3,729.7	1	1,494.5	2
		2	724.6	-
		3	768.6	2
		4	345.3	-
		5	396.7	-
60	3,270.8	1	1,447.0	2
		2	653.0	-
		3	357.1	-
		4	257.2	-
		5	556.5	-
61	3,051.7	1	448.0	공동건축
		2	189.6	-
		3	144.1	공동건축
		4	239.4	-
		5	477.3	-
		6	250.1	-
		7	662.2	-
		8	641.0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8	3,738.0	1	121.9	-
		2	598.9	공동건축
		3	195.5	
		4	173.8	-
		5-1	556.6	-
		5-2	371.2	-
		5-3	348.6	-
		6	199.3	-
		7	527.6	-
		8	339.4	-
		9	305.2	-
69	614.4	4	614.4	-

3) 단독주택용지

○ 필지규모 4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0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적(㎡)	
1	2,050.4	1	633.8	2
		2	1,416.6	4
2	3,158.4	1	289.7	공동개발
		2	117.7	
		3	196.3	-
		4	1,864.1	6
		5	428.1	2
		6	262.0	-
3	2,861.6	1	263.6	-
		2	294.5	-
		3	1,350.4	4
		4-1	345.6	-
		4-2	607.5	2
8	3,194.5	1-1	304.2	-
		1-2	300.0	-
		2	914.5	3
		3-1	265.3	-
		3-2	314.3	-
		3-3	403.2	2
		3-4	242.2	-
		3-5	354.1	-
		4	96.7	-
9	3,330.9	1	594.0	2
		2	211.9	-
		3	186.6	-
		4	191.6	-
		5	267.1	-
		6	267.5	-
		7	152.6	-
		8	843.3	4
		9	123.8	-
		11	270.3	-
		10	90.5	-
		12	131.7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10	1,754.2	1	326.5	-
		2	151.2	-
		3	193.3	-
		4	174.9	-
		5	174.9	-
		6	320.8	-
		7	412.6	2
18	2,816.5	1	797.8	3
		2	1,088.8	5
		3	223.7	-
		4	353.2	-
		5-1	176.7	-
		5-2	176.3	-
19	3,188.4	2	898.3	2
		3	273.5	-
		4	443.2	2
		5	814.9	3
		6	758.5	2
20	4,985.7	1	964.5	3
		2	552.8	2
		4	195.0	-
		5	659.3	2
		6	568.7	2
		7	589.7	2
		8	241.3	-
		9	363.0	-
		10	398.9	-
		11	452.5	2
		21	3,737.8	1
2	565.3			2
3	404.7			-
4	807.5			-
43	2,576.5	2	2,576.5	8
45	1,999.7	2	269.8	-
		3	1,158.4	5
		4	295.6	-
		5	275.9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46	5,522.2	1	723.1	3
		2	1,645.0	6
		3	263.2	-
		4	1,282.4	4
		5	1,608.5	6
47	2,995.8	1	438.1	2
		2	440.5	2
		3	434.6	2
		4	505.5	2
		5	646.3	2
		6	530.8	2
49	2,288.6	1	1,794.4	4
		2	494.2	2
51	4,478.8	1	266.0	-
		2	212.0	-
		3	452.9	2
		4	854.6	4
		5	295.6	-
		6	158.1	-
		7	102.3	-
		8	103.3	-
		9-1	291.7	-
		9-2	333.5	-
		9-3	196.5	-
		9-4	202.8	-
		9-5	214.0	-
		10	795.5	3
52	4,696.6	1	1,005.1	4
		2	206.9	-
		3	179.9	-
		4	92.5	-
		5	456.8	-
		6	804.1	3
		7	507.2	2
		8	200.6	-
		9	442.9	2
		10-1	248.5	-
		10-2	248.1	-
		10-3	304.0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53	4,410.8	1	387.6	-
		2	317.6	-
		3	577.3	2
		4	243.3	-
		5	236.0	-
		6	658.1	2
		7	313.4	-
		8	543.9	2
		9	386.0	-
		10	385.9	-
		11	361.7	-
54	4,122.2	1	622.3	2
		2	117.6	-
		3	321.9	-
		4	580.5	2
		5	502.7	2
		6-1	233.0	-
		6-2	233.3	-
		7	344.5	-
8	1,166.4	5		
55	4,974.6	1	1,193.1	3
		2	751.9	2
		3	171.0	-
		4	297.3	-
		5	251.2	-
		6	515.1	2
		7	246.9	-
		8	312.4	-
		9	140.3	-
		10	192.7	-
		11	407.6	2
		12	495.1	2
56	4,518.4	1	845.5	4
		2	140.9	-
		3	401.2	2
		4	265.8	-
		5	323.6	-
		6	203.8	-
		7	488.5	2
		8	220.2	-
		9	96.0	-
		10	166.1	-
		11	694.3	3
		12	457.9	2
		13	214.6	-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2	4,958.1	1	385.5	-
		2	364.0	-
		3-1	594.9	2
		3-2	1,169.7	3
		4	539.3	2
		5	618.3	2
		6	288.5	-
		7	997.9	4
63	3,741.5	1	1,218.5	6
		2	783.0	2
		3	198.2	-
		4	490.7	2
		5	404.9	2
		6	646.2	3
64	4,219.0	1	623.9	2
		2-1	250.5	-
		2-2	250.9	-
		2-3	251.0	-
		2-4	251.0	-
		3	248.7	-
		4	147.6	-
		5	802.4	3
		6	147.5	-
		7-1	369.8	-
		7-2	363.7	-
		8	512.0	2
65	4,997.5	1	1,034.5	4
		2	774.2	2
		3	149.7	-
		4	460.5	2
		5	542.5	2
		6	978.4	4
		7	215.7	-
		8	310.7	-
		9	531.3	2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6	5,293.5	1	1,027.9	4
		2-1	238.1	-
		2-2	238.0	-
		2-3	237.3	-
		2-4	237.2	-
		2-5	237.1	-
		3	964.7	4
		5	176.0	-
		6	310.8	-
		7	143.8	-
		8	387.1	-
		9	298.6	-
		10	796.9	3
		67	6,150.9	1
2	384.1			-
3	260.6			-
	238.1			-
	238.2			-
	238.2			-
5	433.8			2
6	138.9			-
7	198.2			-
8	352.3			-
9	449.1			2
10	721.5			3
11	581.6			-
12	186.1			-
13	1,395.4	6		
69	1,940.6	1	229.7	-
		2	335.1	-
		3	754.9	3
		5	214.7	-
		6	143.6	-
		7	262.6	-
		70	2,953.2	1
2	335.8			-
3	671.7			2
4	679.5			3
5	340.1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A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1, 30, 31, 37	11, 30, 31, 37 (공동주택지 A용도)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A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19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A	
		배 치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 축 선	°별표3의 A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7,25,26,27,28,57, 58,59,60,61,68 (1~9),69(4)	7,25,26,27,28,57,58,5 9,60,61,68(1~9), 69(4)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B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B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 산정에 제외한 다. 단, 건축물의 용도전체가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형 태	°별표2의 B	
		배 치	°별표3의 B	
		색 채	°별표4의 B	
건 축 선	°별표3의 B			

3) 단독주택용지 : 변경

■ 단독주택용지(C1용도) 결정 조서(8m 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1~2),2(1~6),3(1~3,4-1~2),8(1-1~2,2,3-1~5,4),9(1,8~12),10(2~4),19(4~6),20(1~2,4~11),21(3~4),43(2),45(3~5),46(1~5),47(2~5),51(1~8,9-1~5),52(2~9,10-1~3),53(7~11),54(2~3,6-1~2,7),55(2~9),56(1~10,12~13),62(1~2,3-1~2),63(2~6),64(1,2-1~4,3~6),65(1,2~2,8),65(6~9),66(2~1~2,3,5~6),67(1~3,4-1~3,5~12),69(1,2~3,5~7),70(2~5)	1(1~2),2(1~6),3(1~3,4-1~2),8(1-1~2,2,3-1~5,4),9(1,8~12),10(2~4),19(4~6),20(1~2,4~11),21(3~4),43(2),45(3~5),46(1~5),47(2~5),51(1~8,9-1~5),52(2~9,10-1~3),53(7~11),54(2~3,6-1~2,7),55(2~9),56(1~10,12~13),62(1~2,3-1~2),63(2~6),64(1,2-1~4,3~6),65(6~9),66(2~1~2,3,5~6),67(1~3,4-1~3,5~12),69(1,2~3,5~7),70(2~5) 단독주택용지 C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1 변경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1 불허용도		불허용도	별표1 변경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1		형 태	*별표2 변경의 C1	
		배 치	*별표3의 C1		배 치	*별표3의 C1	
		색 채	*별표4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 축 선	-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2용도) 결정 조서(10m 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9(2~8),10(1,5~7),18(2~4,5-1~2),43(2),49(1~2),45(2),47(1,6),51(10),52(1),53(1~6),54(1,4~5,8),55(1,10~12),56(11),62(4~5,7),63(1),65(1~6),66(1,2~3~5,7~10),67(13),70(1)	9(2~8),10(1,5~7),18(2~4,5-1~2),43(2),49(1~2),45(2),47(1,6),51(10),52(1),53(1~6),54(1,4~5,8),55(1,10~12),56(11),62(4~5,7),63(1),65(1~6),66(1,2~3~5,7~10),67(13),70(1) 단독주택용지 C2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1 변경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2 불허용도		불허용도	별표1 변경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2		형 태	*별표2 변경의 C2	
		배 치	*별표3의 C2		배 치	*별표3의 C2	
		색 채	*별표4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 축 선	-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3용도) 결정 조서(12m 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18(1), 19(2~3),21(1~2), 43(2)	18(1), 19(2~3),21(1~2), 43(2) 단독주택용지 C3	용도	허용 용도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18(1), 19(2~3),21(1~2), 43(2)	18(1), 19(2~3),21(1~2), 43(2) 단독주택용지 C3	용도	허용 용도	°별표1 변경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1의 C3 불허용도				불허 용도	°별표1 변경의 C3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3	형 태			°별표2 변경의 C3		
		배 치	°별표3의 C3	배 치			°별표3의 C3		
		색 채	°별표4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 축 선	-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C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경사유
C1	허용용도, 형태	별표1의 C1 허용용도 변경	건축 허용용도 추가 및 형태기준 변경
C2	허용용도, 형태	별표1의 C2 허용용도 변경	건축 허용용도 추가 및 형태기준 변경
C3	허용용도, 형태	별표1의 C3 허용용도 변경	건축 허용용도 추가 및 형태기준 변경

4) 교육시설용지 : 변경 없음

■ 교육시설용지(D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4,6,45(1)	4,6,45(1) (교육시설용지 D용도)	용 도	°학교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5) 공공청사용지 : 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E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57(7)	57(7) (공공청사용지 E용도)	용 도	°공공청사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6) 주차장용지 : 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F용도)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0(8),43(1)	10(8),43(1) (주차장용지 F용도)	용 도	◦주차장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지평식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별표3의 C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별표 2] : 건축물 형태 분류표 : 변경

[별표 3] : 건축물 배치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4] :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5] :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별표 6] :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별표 7]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변경 없음

[별표 8] : 기타사항 : 변경 없음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기정)

구분	A	B	C1	C2	C3	D~F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D) 공공청사(E) 주차장(F)
권장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 집회장 (다중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 시설(영유아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 시설(영유아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12m이상도로에 12m 접함) 	-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초과 1.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 용적을 180% 이하로 완화
-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 주4)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주5)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 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 주6)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 주7) 획지분할시 전면에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변경)

구분	A	B	C1	C2	C3	D~F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D) 공공청사(E) 주차장(F)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육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 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 공동주택 (아파트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12m이상도로에 12m 접함)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총고를 1.5m초과 1.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 용적을 180% 이하로 완화
-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 주4)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1층의 높이를 산정한다)
- 주5)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주6)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 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 주7)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 주8)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별표 2]

건축물 형태 분류표 (기정)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용지(C1,C2,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로 제한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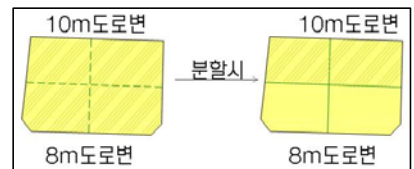
건축물 형태 분류표 (변경)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 (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를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 (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용지 (C1,C2,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다른 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로 제한 (단,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1층의 높이를 산정)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 3]

건축물 배치 분류표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용지 (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중로 2-169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담장 설치 : 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를 권장 -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담장설치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 - 건축한계선 지정 구역(담장 설치를 불허하여 일반인의 활용 유도)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용지 (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중로 2-169호선, 중로 2-171호선, 중로 2-172호선, 중로 3-145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0.6m이하의 식수대, 높이 1.0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독주택용지 (C1,C2,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2m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이 8m 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1적용 - 전면이 10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2적용 - 전면이 12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3적용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한 획지에 대한 기준은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별표 5]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기 타 사 항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1) 차량출입불허구간

- 종로 2-169호선변의 주차통로를 제외한 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2) 주차통로

-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가능한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획지 1개소당 1개소의 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1개소당 통로폭은 최소3m이상 확보
(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선정)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 근린생활 용지내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권장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보행활동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대중 인식이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별표 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도시계획도로	
도시 계획 도로	-	가로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설치 ◦시설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띄어서 식재하며, 식재간격은 6~8m을 기준으로 함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 및 일반콘크리트블럭 등의 재료 사용 유도 ◦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 7]**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변경 없음)**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별표 8]**기 타 사 항 (변경 없음)**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개정 시행 2011. 1. 1] 제104조 및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음

○ 부과지역

- 재산세 : 인천광역시 서구 전지역

2011. 1 . 3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4호

공시송달 공고

계약해지 공문을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 5 ~ 1. 19(15일간)
2. 송달내용 : 계약해지 통보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3-5호 이원빌딩 1층
 - 대상자 : (주)도시개발연구원(대표 : 이승규)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절 4가
5.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032-560-4152)

2011. 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5호

가좌진주1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가좌진주1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명칭 : 가좌진주1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2,870㎡
4. 공람내용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안)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구보 게재일 기준]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7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6호

롯데우람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롯데우람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명칭 : 롯데우람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5,244.5㎡
4. 공람내용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안)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구보 게재일 기준]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7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7호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명칭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53,855㎡
4. 공람내용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안)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구보 게재일 기준]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7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21호

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우리 구 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1. 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당하지구시가지조성사업조합
3.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내역

동 명	종전 지적공부(폐쇄)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확정)			
	지 번	지목	면적(㎡)	지적공부	지 번	지목	면적(㎡)	지적공부
당하동	866외 49	대	734	토지대장:93매 임야대장:6매 지적도:93매 임야도:6매	1065-1외 20	대	7894.3	토지대장 : 34매 경계점좌표 등록부 : 34매 지적도 : 34매
백석동	23-17외 14	대	86		251-1외 12	대	174.9	
	“폐쇄	지번	붙임 “		“확정	지번	붙임 “	
	계	99필	58,513		계	34필	58,520.7	65필지 감소 7.7㎡ 증가

4. 공고기간 : 2011. 1. 6. ~2011. 1. 12. (7일간)
5. 열람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6. 문의전화 : 032-560-4822~3

동명	확정지번	지목	면적(m ²)	동명	종전지번 (폐쇄)	지목	면적(m ²)	블록지번		비고
								블록	롯트	
당하	1065-1	대	7,894.3	당하	877-13	답	397	1	1	
				당하	872-1	창	304			
				당하	872-2	답	3,200			
				당하	872-3	답	127			
				당하	872-9	대	652			
				당하	872-11	답	2,126			
				당하	873-4	대	925			
				당하	875-8	대	429			
				당하	875-9	주	76			
				당하	875-25	주	1,177			
				당하	876-6	답	944			
				당하	876-8	대	1,202			
				당하	876-9	답	15			
				당하	876-13	대	451			
				당하	877-9	답	339			
				당하	877-14	대	1,194			
				당하	878-2	답	1,387			
				당하	880-9	답	66			
당하	880-10	답	201							
당하	1065-2	대	6,711.0					1	3	체비지
당하	1065-3	차	208.1					1	2	체비지
당하	1065-4	구	374.8							공공시설
당하	1065-5	차	339.1					1	4	체비지
당하	1066-1	대	569.3	당하	873-2	대	595	2	1	
당하	1066-2	대	307.4	백석	23-10	대	829	2	2	
당하	1066-3	대	358.9	당하	866	대	734	2	3	공유
당하	1066-4	대	367.0	당하	819-8	전	524	2	4	
				당하	819-6	전	409			
당하	1066-5	대	278.9	당하	874-8	대	139	2	5	공유
당하	1067-1	대	17,488.1	당하	874-10	장	7,188	4	1	공유
				당하	865-3	전	2,539			
				당하	867-1	전	291			

				당하	868	대	939			
				당하	869	전	664			
				당하	873-1	대	1,613			
				당하	874-1	대	810			
				당하	874-3	대	902			
				당하	874-4	대	1,706			
				당하	874-5	대	337			
				당하	874-6	대	126			
				당하	874-7	대	132			
				당하	874-9	대	208			
				당하	874-11	대	428			
				당하	874-12	장	2,790			
				당하	874-13	도	81			
				당하	874-14	장	1,058			
				당하	874-16	장	1,877			
				당하	865-2	대	116			
				당하	870	전	96			
당하	1067-2	대	2,824.9	당하	865-1	전	1,841	4	2	
				당하	819-3	답	575			
				당하	819-7	대	323			
				당하	864-1	답	2,162			
				당하	864-2	답	866			
				당하	871	전	102			
당하	1067-3	대	4,767.0					4	3	체비지
당하	1067-4	공	1,800.0							공공시설
당하	1068	도	4.2							공공시설
당하	1069	도	391.9							공공시설
당하	1070	도	225.6							공공시설
당하	1071	도	3,407.0							공공시설
당하	1072	도	1,053.1							공공시설
당하	1073	도	2,697.4							공공시설
당하	1074	도	2,934.6							공공시설
백석	251-1	대	174.9	백석	23-15	대	158	3	1	

백석	251-2	대	203.6	백석	23-5	대	310	3	3	
백석	251-3	대	163.1	백석	23-7	대	206	3	4	
백석	251-4	대	178.9	백석	23-14	대	140	3	2	
백석	251-5	대	219.8	백석	23-8	대	227	3	5	공유
				백석	23-16	대	118			
백석	251-6	대	190.5	백석	23-10	대	829	3	6	
백석	251-7	대	154.7	백석	23-9	대	174	3	7	
백석	251-8	대	313.6	백석	23-10	대	829	3	8	
백석	251-9	대	226.2	백석	23-23	대	157	3	9	
				백석	23-12	대	58			
				백석	23-17	대	86			
				백석	23-18	대	110			
백석	251-10	대	24.2	백석	23-22	대	23	3	10	
백석	252	도	271.2							공공시설
백석	253	도	143.9							공공시설
백석	254	도	1,253.5							공공시설
이	하	여	백	당하	820-13	답	11			금전청산
				당하	859-3	답	3			
				당하	860-1	전	54			
				당하	874-17	도	28			
				당하	877-12	도	46			
				당하	산198-2	도	99			
				백석	23-2	도	5			
				백석	23-6	도	156			
				백석	산24-2	도	30			
				백석	산24-8	임	123			
				백석	산26-2	도	100			
				당하	산198-7	도	143			
				백석	산26-5	임	34			
				당하	1003-8	구	4,090			
				당하	1007-4	도	369			
				당하	820-7	답	15			
				당하	863-3	답	165			
				당하	872-12	답	54			
				당하	872-7	답	40			

				당하	872-8	답	939			법 53조 무상귀속
				당하	873-6	대	2			
				당하	874-18	도	40			
				당하	875-10	도	253			
				당하	875-13	대	96			
				당하	875-14	잡	50			
				당하	875-16	대	1			
				당하	875-18	도	13			
				당하	875-19	대	296			
				당하	875-21	대	7			
				당하	875-22	대	2			
				당하	875-23	대	324			
				당하	875-24	잡	110			
				당하	876-14	답	129			
				당하	877-8	답	67			
				당하	226-9	도	530			
합계	34필		58,520.7 m²		99필		58,513 m²			증7.7 m² 감65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24호

2011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와 인천광역시서구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단위:명)

구 분	총 수	내국인수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	외국인수 (영주자격자)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수비율)	비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304,046	303,782	194	70	25,338(1/12)	

- ※ 내국인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2010. 12. 31일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 ※ 외국인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2011년 1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26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구청장>

(단위:명)

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9세이상주민	등록 외국인			
계	303,852	303,782	70	45,578		
검암경서동	22,054	22,048	6		3,039	
연희동	35,470	35,464	6		3,039	
청라동	3,099	3,099	-		465	
가정1동	9,745	9,745	-		1,462	
가정2동	7,191	7,189	2		1,079	
가정3동	9,730	9,727	3		1,460	
신현원창동	21,817	21,816	1		3,039	
석남1동	20,201	20,191	10		3,031	
석남2동	14,390	14,385	5		2,159	
석남3동	14,312	14,308	4		2,147	
가좌1동	11,552	11,549	3		1,733	
가좌2동	18,411	18,408	3		2,762	
가좌3동	17,023	17,018	5		2,554	
가좌4동	10,295	10,289	6		1,545	
검단1동	30,868	30,862	6		3,039	
검단2동	16,696	16,695	1		2,505	
검단3동	15,826	15,823	3		2,374	
검단4동	25,172	25,166	6		3,039	

※ 산정된 서명인 수 45,578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6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구의원>

(단위:명)

구별	선거구별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서구	가선거구	계	88,562	88,546	16	17,713	
		검단1동	30,868	30,862	6		886
		검단2동	16,696	16,695	1		886
		검단3동	15,826	15,823	3		886
		검단4동	25,172	25,166	6		886
	나선거구	계	60,623	60,611	12	12,121	
		검암경서동	22,054	22,048	6		607
		연희동	35,470	35,464	6		607
		청라동	3,099	3,099	-		607
	다선거구	계	26,666	26,661	5	5,334	
		가정1동	9,745	9,745	-		267
		가정2동	7,191	7,189	2		267
		가정3동	9,730	9,727	3		267
	라선거구	계	70,720	70,700	20	14,144	
		신현원창동	21,817	21,816	1		708
		석남1동	20,201	20,191	10		708
		석남2동	14,390	14,385	5		708
		석남3동	14,312	14,308	4		708
	마선거구	계	57,281	57,264	17	11,457	
		가좌1동	11,552	11,549	3		573
		가좌2동	18,411	18,408	3		573
		가좌3동	17,023	17,018	5		573
		가좌4동	10,295	10,289	6		573

※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27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단위:명]

19세이상의 주민수			19세이상의 주민총수 ④ (①+②+③)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④×1/40)
내 국 인 (선거권없는자제외) 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②	외 국 인 (영주권 취득후 3년 경과자) ③		
303,782	194	70	304,046	7,602명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33호

2011년 숲가꾸기사업 사업면적 증가분 시행 공고

2011년 숲가꾸기 사업 면적 증가에 따른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소재불명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1. 1. 1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사 업 명 : 2011년 숲가꾸기 사업(추가분)
2. 사업내용 : 천연림개량, 임내정리 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호·육성 등 산림기능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
3. 대 상 지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11. 1. 10 ~ 2011. 1. 25 (15일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가. 본 공고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내 이의신청
 - 나.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6. 기타사항
 - 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면적 및 대상지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 녹지조경팀(☎ 032-560-4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1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추가분) 조서 1부. 끝.

2011년도 숲가꾸기 대상지 추가필지

읍·면·동			지 적 (㎡)	작업면적 (ha)	공고현황	소유자	
						주 소	성 명
금곡동	산 44	-1	14,876	14,876	신규편입	인천 중구 인현동 1	이지영외15인
금곡동		-2	1,893	1,893	신규편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5 한양아파트104-206	김원태외1인
금곡동		-3	13,388	13,388	신규편입	인천 중구 인현동 1	이지영외15인
금곡동	산 46		12,992	12,992	신규편입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0 아람마을512동303호	박찬봉
금곡동	산 47	-2	15,396	15,396	신규편입		국(산림청)
금곡동		-3	3,967	3,967	신규편입	왕길리 384	이범재외 2인
금곡동		-4	7,250	7,250	신규편입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706-1403	강옥매외2인
금곡동		-6	5,841	5,841	신규편입	인천 남구 용현동 610-195	박용탁외1인
금곡동	산 48	-2	3,868	3,868	신규편입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1 원흥아파트101-105	함동철
금곡동	산 49		10,959	10,959	신규편입		국(국방부)
금곡동		-2	1,044	1,044	신규편입	서울 강동구 암사동 491-11	김안자
금곡동		-9	905	905	신규편입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1 방화아아파트403-805	이치영
금곡동		-10	396	396	신규편입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1 방화아아파트403-805	이치영
금곡동		-11	3,239	3,239	신규편입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1 방화아아파트403-805	이치영
금곡동	산 50	-1	11,993	11,993	신규편입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0-5	이순자외2인
금곡동	산 54		8,231	8,231	신규편입	인천 동구 창영동 82	문학영
금곡동	산 93	-1	5,247	5,247	신규편입	인천 서구 금곡동 465	양태영
금곡동		-2	5,730	5,730	신규편입		국(국방부)
금곡동	367임		321	321	신규편입		국(국방부)
금곡동	산 94	-1	3,809	3,809	신규편입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918동 403호	문형주외1인
금곡동	산 95	-1	9,612	9,612	신규편입	인천 서구 금곡동 422	양태영
금곡동	산 95	-2	73,590	73,590	신규편입		국(국방부)
금곡동	산 96		486	486	신규편입	인천 서구 금곡동 422	양태영
금곡동	산 97	-1	9,893	9,893	신규편입	인천 중구 신포동 3-14	김석철외2인
금곡동	산 103	-1	8,473	8,473	신규편입		국(산림청)
금곡동	377	-5임	320	320	신규편입	인천 서구 금곡동 377-8	주식회사코벨소
금곡동	377	-6임	272	272	신규편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89-4 시화공단2바 208호	영산종합철강주식회사
금곡동	377	-14임	234	234	신규편입	인천 서구 금곡동 377-15	세화엔지니어링주식회사
마전동		-16	6,818	6,818	신규편입	인천 부평 청천동 176 대우아파트 101동 1903호	임용빈
마전동		-17	5,181	5,181	신규편입	인천 부평 청천동 176 대우아파트 101동 1903호	임용빈
마전동		-18	5,305	5,305	신규편입	인천 부평 청천동 176 대우아파트 101동 1903호	임용빈
마전동		-19	5,284	5,284	신규편입	인천 부평 청천동 176 대우아파트 101동 1903호	임용빈
마전동	산 46		1,784	1,784	신규편입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32 메가라인빌딩 716	황수환
마전동		-5	3,926	3,926	신규편입	인천부평구 부개동 445	박경수
대곡동	산 107	-3	13,474	13,474	신규편입	서울 강서구 등촌동 564-7 삼형그레이스빌101-1002	황방남
대곡동		-5	330	330	신규편입	인천 동구 화평동 456	류재철
가정동		-7	1,273		신규편입	인천 계양구 직전동 580 현대아파트 213-503	이영숙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11개 조항
 - 주요조항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능
 - 제3조 : 구성
 - 제7조 : 회의 및 의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 31.(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845) 또는 Fax(560-481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